

남양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원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72
----------	-----

발의연월일 : 2026. 1. 27.

발 의 자 : 원주영, 한근수, 정현미,
이정애, 박은경, 김동훈

1. 제안 이유

남양주시민 및 단체로부터 소장 도서를 기증받아 공공도서관의 장서 확충에 활용하고, 보존 상태가 양호한 불용 도서 등 여분의 도서를 필요한 시민·기관 및 단체에 기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식자원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명시(안 제3조)
- 다. 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라. 공공도서관의 도서 기증에 관한 규정(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5. 관계법령

가. 「독서문화진흥법」

나. 「도서관법」

다. 「도서관법 시행령」

남양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를 통하여 지식자원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서관”이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법」 제47조에 따라 개인, 기관 및 단체는 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관에 도서 기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 및 접수 절차 등은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를 따른다.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를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남양주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할 수 있다.

1. 기증받은 도서 중 장서로 미등록한 도서
2.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폐기·제적 도서 중 보

존 상태가 양호한 도서

3. 그 밖에 기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도서

② 제1항에 따라 도서를 기증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 교육기관, 복지시설, 군부대, 공공기관 등

2. 관내 독서문화 진흥 및 주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

3. 독서의 달 행사 등 도서관 행사에 참여한 남양주 시민

4.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라 도서관의 도서를 기증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서의 기증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홍보) 시장은 도서 기증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누리집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시장은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남양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제5조에 따른 도서관의 도서 기증에 관한 사항

기관 정보 및 도서 활용계획

<p>기관소개</p>	<p>- 기관 소개, 기관이 하는 일, 주 이용자 특징 등</p>
<p>자료활용 계획</p>	<p>- 자료 배부 신청 사유 및 인수 후 자료 활용 계획 등 상세히 기재</p>
<p>사 진 (2장 이상)</p>	<p>- 배부 자료 인수 후 비치되는 공간(또는 서가) 사진 - 전체 공간 사진(1장), 비치예정 공간 또는 서가 사진(1장)</p>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나. 재정 수반 요인

- 제7조(포상) 시장은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3. 미첨부 사유

- 도서 기증 활성화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됨

4. 작성자

도서관사업소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

☑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도서관법」

제45조(도서관 인력·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① 도서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와 도서관 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도서관자료의 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금전 등의 기부) ①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및 접수의 절차, 관리·운영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도서관 인력·시설·자료)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 [별표 7]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제33조제3항 관련)

1. 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

가.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나.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다.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2.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가.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나. 훼손, 파손 또는 오손

다.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
라.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수 없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의 관장이 정한다.